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05월 30일, 강유정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0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국회(임사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4. 8. 27) 상정, 심사, 의결
(원안가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9. 05)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유정 의원)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창작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사안별로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42.6%이고,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애니메이션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애니메이션산업 분야의 용역계약에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애니메이션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표준계약서) ① (생략)	제10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애니메이션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표준계약서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을 정형화하는 ‘표준계약양식’으로, 현행법 제10조¹⁾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애니메이션산업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 ②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 ③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④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4종의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를 고시하였음.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20.6%,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계약서를 표준계약서로 작성하는 경우는 22.0%²⁾로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1/4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또한, 동 조사에서 ‘납품 후 재작업 요구 및 미보상’, ‘현저히 낮은

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표준계약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이외에 거래처 자체 계약서를 활용하는 비율은 34.8%,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 진행하는 경우도 18.5%로 조사됨.

대가 책정' 등 콘텐츠산업의 10대 불공정행위³⁾ 경험률은 애니메이션산업의 기업들이 39.8%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종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볼 때 애니메이션 산업 분야에서 표준계약서의 활용 미흡이 계약상 불공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음.

[콘텐츠산업 프리랜서의 표준계약서 활용여부]

(단위: %)

구 분	비중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표준계약서 활용	20.6
거래처 자체 계약서 활용	34.8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계약서를 표준계약서로 작성	22.0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만 진행	18.5
기타	4.0

주) 총 응답자 수는 422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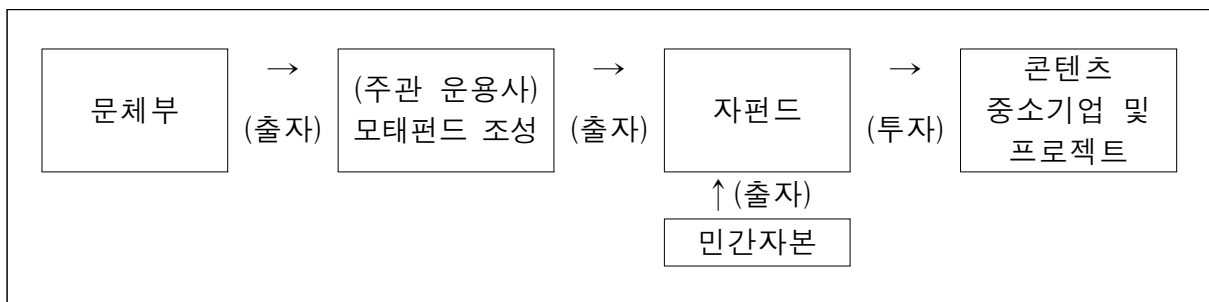
자료: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

이에 개정안은 애니메이션산업 분야에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애니메이션산업 종사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애니메이션산업 분야에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3) 해당 조사에서 선정한 콘텐츠 산업 10대 불공정행위는 제작 관련 방해, 문화상품 수령거부, 납품 후 재작업 요구 및 미보상, 기술정보 강제 양도, 판촉 유통 비용 전가, 자기 계열회사 상품과 차별취급, 특정 결제방식 강요, 문화상품 사재기 행위,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지식재산권 양도 행위임.

한편,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해 재정지원 우대의 근거를 신설하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4)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문화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정부가 모태펀드를 조성한 후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재간접투자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 절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그 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산업 및 관련 제작자에 대한 투자
 2. 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투자
 3.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모집과 관리
 4. 투자조합자금의 관리
 5. 문화상품 제작자를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알선
 6. 문화산업에 관한 첨단기술, 설비 및 전문인력 등의 알선과 경영 자문
 7. 창업을 위한 상담 및 제작 활동의 지원
 8. 문화상품의 유통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저작권 관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제4호의 투자조합자금 관리는 특정 문화상품의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포함한다.
- ④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투자조합) ①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와 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개요, 출자계획, 수익의 배분계획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투자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조합의 범위 및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애니메이션산업 분야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하여 재정지원 우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투자는 해당 투자조합의 투자는 행위 주체가 민간이므로 이를 재정 지원 우대 조항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박정하 위원장)

원안가결

6. 심사결과

원안의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일부 체계·자구 수정이 있었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

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표준계약서)”를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애니메이션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u>표준계약서</u>) ① (생략)	제10조(<u>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u>)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애니메이션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